

# 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
- 지방행정혁신, 사업별 예산 등 한시인력을 신규행정수요 분야 인력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개정조례 임

다. 주요내용

- 법령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- 한시정원 관련조항 삭제(안 제5조 및 별표2)

- 한시정원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재배치
  -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 : 변동 없음
    - 한시정원 : △

○ 검토결과

- 한시정원 7명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